

환경관리 **질의응답**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폐기관련 문의

- Q**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 대상인 전력용 콘덴서, 리액터, 방전코일은 신고시 PCBs 농도분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폐기시 PCBs 농도분석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콘덴서는 밀폐되어 있어 시료채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A** 콘덴서, 리액터, 방전코일에 PCBs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기별로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성분분석결과가 PCBs 함유량이 1리터당 2밀리그램을 초과할 경우에는 PCBs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PCBs 함유량이 1리터당 2밀리그램 이내 이고 기름 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폐유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시설에서의 자가측정관련 문의

- Q**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에서 자가측정항목 및 회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규정 중 굴뚝자동측정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 자동측정되는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면제토록 되어있는데요, 해당시설의 경우 굴뚝자동측정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은 되고 있으나 자료전송은 2010년부터 될 경우 단지 설치만 되어있다면 자료전송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항목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 A**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해서 형식승인을 취득한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동

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측정기기의 경우 동 측정기기에서 생산되는 측정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의 자가측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자의 범위

- Q**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3호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어떤 종류의 폐기물들을 말하는 것인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종이류, 고철류, 병류)폐기물도 모두 포함하여 300kg 이상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폐합성수지류)만을 말하는 것인지요?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폐기물 배출량이란 폐지, 고철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 병류, 폐합성수지류 등이 해당됩니다.

공동방지시설 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 Q** 법인 2개 사업장에서 대기, 수질 공동방지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법인 2곳에서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

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 2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매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따라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또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가동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공동처리시설 운영자, 배출사업자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출사업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분야는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냉각탑 블로우다운수를 우수로 방류

Q 냉각탑의 가동시 증발등에 따른 냉각수질 확보를 위해 일정량의 냉각수를 드레인(블로우 다운)할 경우 그 블로우다운 한 물을 우수로로 방류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폐수로 구분되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해야 하나요?

A 질의 내용의 냉각탑의 냉각폐수, 간접냉각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배출시설)에서 관리하는 폐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5조(공공수역 배출금지)에서 규정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이 냉각수에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방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수역 방류로 인하여 주변환경 등에 영향을 주거나 관계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악취관련내용

Q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시설에 관한 내용 저희 회사는 폐수처리장 원수(집수조),1차처리수조,포기조에 각각에 동을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내부에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다시 덮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밀폐했으며, 현재는 악취방지시설을 가동중에 있으며, 원수,1차처리수조,포기조는 외부로 가스누출이 없는데 여기에 연결된 방지시설배관일부에 대해 폐쇄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적정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살포를 통한 악취 제거, 그 밖의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 덮개 또는 상부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덮개 설치 등을 통한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방지시설 배관일부 폐쇄 등 악취방지계획의 변경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항상 준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법령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와 가능 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세관폐수에 대하여

Q 보일러 세관폐수에 대하여 궁금하게 있어 질의 합니다. 보일러 세관수가 폐수로 되어 있는것은 알고 있지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위탁폐수대상 폐수에 해당이 되는지 그 근거 법령이 궁금하구요. 세관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폐수배출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그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제2항제3호에서 “폐수 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으나 폐수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기기 부착시기에 대한 질의

Q 터널굴착시 배출되는 오탁수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된 신규시설이며 2008년 10월에 제3종으로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TMS 기기 의무부착시기를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환경부 홈페이지통합검색시스템(http://search.me.go.kr/search/7search_search.jsp)에서 확인되는 내용(‘0. 9. 30 이후 3종 사업장은 부착기한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9월 이내에 부착 의무)과 수질원격감시체계관련제시시스템(<http://www.watertms.or.kr/>)에서 확인되는 내용(‘08. 10. 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부착대상이 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또, 변경허가(신고) 후 9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귀 사업장의 시설 설치 및 종변경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알 수가 없어 자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7, 비고 7에 의하여 3종 사업장의 경우, 이 영 시행(‘07. 11. 30)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기존시설)은 2010년 10월 1일 이후에, 이 영 시행 이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신규시설)에는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배출하여 초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적용받는 부착기한은 귀 사업장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기본적으로 3종 사업장인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측정기기 부착유예 대상입니다.

자가측정주기 관련 질의

Q 자가측정관련 주기에 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5종시설은 반기회로서 2008년 상반기(1. 1~6. 30) 중에 가동개시한 시설은 상반기에 측정을 생략하고 하반기(7. 1~12. 31)중에 측정을 실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 위에 사항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 그렇다면 2,3종 시설은 10월달에 가동개시한 시설은 10월에 측정을 생략하고 다음달인 11월부터 측정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3) 1종시설은 주 1회이므로 가동개시한 주가 첫째주 이면 둘째주부터 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11에 따라 4·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반기구분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하면 될 것이므로 상반기 중 가동개시한 4·5종 시설은 6월 30일 이전에 1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상반기 중 측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하반기부터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별표6에서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을 매년 6월 30일과 매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본부과금 산정시 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가동개시한 시설은 6월 30일 이전에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배출구별 규모가 1·2·3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 또는 가동개시월로부터 배출구별 규모에 맞게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동 기간에 시설 미가동 등으로 측정횟수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가동여건 및 측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주기부터 자가측정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